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2013. 12. 16(월)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3. 12. 12.

나. 제출자 : 전용철, 이용범, 이재병, 홍성욱, 류수용, 최용덕, 강병수,
권용오 의원 (외 찬성자 5인)

다. 회부일자 : 2013. 12. 12.

라. 상정일자 : 2013. 12. 16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전용철 의원
- 검토보고 : 왕동항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통해 긍정적 역할을 하였음
-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외수입 등의 자체세입규모가 축소됨
-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불가로 교육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함

-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임
- 전국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230개 기초단체 중 82개 기초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어, 지역적인 교육환경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임.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거나, 법령에 의거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건의안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세입예산 개편으로 기존에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항목이 변경, 규모가 축소되면서 현행 교육지원 규정에 의해 동구와 용진군의 교육 지원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전입금’과 ‘이월금’ 항목이 기존의 세외수입에서 별도항목으로 편성되면서 실질적인 총 세입에는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1)에 재정여건이 어려운 동구와 용진군이 해당되어 교육경비 보조금이 중단될 위기에 있어, 이로 인해 교육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저해되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자체의 교육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인 바
- 이번 건의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사료되며, 다만 특별 교부세 확보를

1) 제3조 :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위하여 이송처에 기획재정부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홍성욱 위원 >

○ 동구 10억, 용진군 5억을 시비로 지원하는데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교부금 이외 특단의 대책으로는?

→ 기초 또는 광역지자체에서 지방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완화가 필요하며 지방세제 개편으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 없음

나. 반 대 : 이용범, 차준택, 류수용, 홍성욱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4명 : 찬성 4명)

○ 이송처에 기획재정부를 추가하고

○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말미에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교부세 외 특별교부금 교부를 추가하도록 수정함

7.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불 입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부. 끝.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건의안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교부세 교부를 강력히 건의한다.”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교부금 교부를 강력히 건의
한다.”로 한다.

이송처 중“국회(소관상임위원회), 안전행정부, 교육부”를 “국회(소관상임
위원회), 안전행정부, 교육부, 기획재정부”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 <p style="margin: 0;">중양정부 차원에서 <u>의 특별교부세 교부를 강력히 건의한다.</u></p>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solid black; margin-top: 10px;"/>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solid black; margin-bottom: 5px;"/> <p style="margin: 0;">중양정부 차원에서 <u>의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교부금 교부를 강력히 건의한다.</u></p> <hr style="border: 0; border-top: 1px solid black; margin-top: 10px;"/>
<p style="margin: 0;">이송처 : <u>국회(소관상임위원회), 안전행정부, 교육부</u></p>	<p style="margin: 0;">이송처 : <u>국회(소관상임위원회), 안전행정부, 교육부, 기획재정부</u></p>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뿐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수요 충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소질 개발, 지역 인재양성 도모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종전 세외수입에 포함되었던 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 등이 별도 세입과목으로 신설 편성됨에 따라 세외수입 등의 자체세입 규모가 축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교육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하였으며,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교육환경은 더욱 악화될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82개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불가능 하게 될 처지에 놓여 있어, 지역적인 교육환경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은 자명하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의 완화 또는 법령에 의거 사업이 불가능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교부금 교부를 강력히 건의한다.

2013. 1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송처 : 국회(소관상임위원회), 안전행정부, 교육부, 기획재정부